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2호

**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(차량기지) 승인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**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20호(2018.12.27.)로 승인한 실시계획(차량기지)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21일  
서울특별시장

- 실시계획(차량기지) 승인 취소 사항 -

1. 사업의 명칭 :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
  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  - 명 칭 :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
  - 대표자 : 김 성 연
  - 주 소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
  
3. 사업의 목적
  - 교통 소외지역인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
  - 구도심 특성인 밀집 주거지역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 및 향후 뉴타운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처
  - 도심접근성 증대로 지역개발촉진 및 1, 2, 4·7호선, 경원선 및 분당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
  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
  - 위 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원
  - 사업규모 : 차량기지 부지면적 20,192.8㎡
  - 총사업비 : 9,894.8억원 (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)
  - 내 용 :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구간 차량기지 1개소 승인
  
5. 사업시행기간
  -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개월
  - 운영기간 :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
  
6. 사업시행방법 : 민간투자사업(BTO방식)

7.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

- 소요토지 확보 : 보상관련 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, 보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
- 소요토지 이용 :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(무상사용)

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

가. 교통시설

1) 자동차정류장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 (중복결정)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자동차정류장	여객자동차터미널	노원구 중계동 368번지	19,448.0	감)7,182.0	12,266.0	건고시547 (1989.10.6.)	제1종 일반주거지역

■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여객자동차터미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적감소</li> <li>- A = 19,448.0㎡ → 12,266.0㎡ (감 7,182.0㎡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북선 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면적 감소</li> </ul>

2) 철도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 (중복결정)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철도	도시철도(차량기지)	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원	-	증)20,192.8	20,192.8		불암산 도시자연공원, 완충녹지 (369-11번지), 대로2-74 (한글비석로) 중복결정

■ 철도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도시철도(차량기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설</li> <li>- A = 20,192.8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북선 철도 차량기지 건설</li> </ul>

9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, 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불입

10. 취소사유 : 영향평가 협의 미완료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